



THE NEW YORK CITY DEPARTMENT OF EDUCATION
JOEL I. KLEIN, *Chancellor*

친애하는 학부모 또는 보호자님께,

2001 년도 연방 낙오아동방지법(No Child Left Behind Act: NCLB)은 타이틀 I 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부모님들이 교사나 자녀를 담당하고 있는 준 전문가들의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습니다. 관련 법에 따라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에 연락하여 자녀의 교사 중 어떤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가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 뉴욕주의 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교사들은 일련의 시험에 합격하고 4 년제 대학을 졸업하여야 하며 자격증 취득 과목에서 대학교 전공 학점을 이수하여야 합니다.

관련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의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“학부모 요청 양식(Parent Request Form)”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. <http://schools.nyc.gov/RulesPolicies/NCLB/ParentsTitle1.htm>

본 양식은 학교의 학부모 코디네이터에게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.

학교장 성명 (Principal Name)

학교 이름 (School Name)